

수원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6371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인수청구]

전 문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김경선

피고,항소인 1. C

2. D

피고보조참가인 1. E

2. J

3. 주식회사 F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병일, 이영희,조윤지

변론 종결 2019. 11. 20

판결선 고 2020. 1. 8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4. 19. 선고 2018가단209262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는 별지1목록 기재 제1항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 제11항 기재 부동산 중 21/111지분, 제12항 기재 부동산 중 228/217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0. 4.30. 접수 제797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8. 1. 25.자 권리포기를 원인으로한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별지도 인용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근판사 이환기 판사 정성화